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

(방문요양)

2024. 1.

h·well

국민건강보험



요양심사실

관련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8호, 2020.12.21.)

고시 제23조(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제2항은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이하 “가족인 요양보호사”라 한다)의 급여비용 산정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고, 이 경우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통보된 가족관계 여부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같은 조 제4항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포함)를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고시 제18조의 표 중 ‘가-2’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함

사례1

특정 기간 동안, 수급자 A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가족관계임에도, 가족관계를 통보하지 않고 수급자 A에게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급여를 1일 180분이상 제공한 것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지급받음

사례2

○○방문요양 기관은 수급자의 딸인 중국 국적의 요양보호사A를 가족관계가 아닌 것으로 통보한 후 일반 방문요양으로 월 20회 이상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으며, 요양보호사A의 남편(수급자의 사위) 또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가족관계를 통보하지 않고,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음

2

연속급여제공 기준 위반

관련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9호, 2022.9.26.)

고시 제18조 (방문요양 급여비용)에 따라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 제공시간에 따라 '가-1'부터 '가-8'까지의 급여비용을 산정하며,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제1항은 식사도움, 외출시 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 동일 수급자에 대하여 '가-1'부터 '가-6'까지의 급여비용을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사례

○○방문요양 기관은 동일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함에 있어 2시간 방문간격 없이 제공하였음에도, 급여비용을 1일 2회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3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기준 위반

관련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1호, 2022.12.28.)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 ①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하여 1가지 이상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 수가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및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실무경력 5년(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60개월) 이상인 요양보호사(이하 '팀장급 요양보호사'라 한다)중 1명 이상을 배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모두 수행한 경우 가산한다. 다만 방문요양 수급자 수가 15인 이상인 기관은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배치하

여야 한다.

1.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여종류의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하여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함
 2. 매월 수급자 욕구사정 및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기록함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불가피한 사유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지 못한 경우
 - 가. 수급자의 사망, 입원 등의 사유로 가정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 나. 월 중에 급여제공을 종료한 경우
 2. 급여제공이 18시 이후 06시 이전에만 이루어져 급여제공 이외의 시간에 방문한 경우. 다만, 매월 1회 이상 수급자 및 급여제공자를 모두 면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수급자에 대하여 3개월 연속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그 밖의 업무수행 시 주의사항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사례1

○○방문요양 기관은 수급자 A에 대하여 매월 1일~10일 급여를 제공하기로 계약하고 급여를 제공하였으나, 기관은 10일 이후 월 중 급여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방문상담 제외 후 청구하였으나, 매월 급여제공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였다면 월중 급여제공 종료로 볼 수 없음에도 가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음

사례2

수급자 A는 해당 월 3일간 입원 후 퇴원하였으며, 퇴원과 동시에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받았음에도, ○○방문요양 기관은 월 중 수급자 입원 등의 사유로 가정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로 보아 방문상담 제외 후 청구하였으나, 수급자 퇴원 후 급여 제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방문상담 제외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가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음